

BAO 192307

1953. 11. 3.  
제3 종우편물인가

제 6315 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         |           |
|---------|-----------|
| 편집및발행   | 총 무 처     |
| 전 화     | 70-4331   |
| 인 쇄     | 대한공론사     |
| 대 표 전 화 | 75-6161~4 |

1972. 11. 29. (수)

## 차 례

## 오늘의 중요지표

○ 대통령 각하 유시(1972. 11. 24) ..... 3

## 공문 시행 관

○ 관용차량운용폐 신에 관한지시(총무처) ..... 6

## 법령

○ 농림부령제514호(농촌진흥청 시험장출장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건증개정령) ..... 7

## 각판

## 고시

○ 법무부고시 제126호(국적상실) ..... 7

○ 법무부고시 제127호(국적상실) ..... 7

○ 상공부고시 제9, 371호(텔레비죤수상기 판매가격지정) ..... 7

○ 상공부고시 제9, 372호(상공부고시 제7, 562호 개정) ..... 7

○ 전설부고시 제501호(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률 설치허가) ..... 8

○ 전설부고시(서울) 제26호(서울도시계획위원회 장 및 송유설비 시설 결정지침승인) ..... 8

○ 체신부고시 제268호(전신전화취급소 설치) ..... 8

## 공고

○ 노동청 공고 제466호(산재보험 요양 담당 의료기관 평가 약사 항변경) ..... 9

○ 부산지방해운국 공고 제138호(선박검사증서 분실 무효) ..... 9

## 지방행정

○ 서울특별시 공고 제268호(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 ..... 9

## 후보판

○ 공시회고 ..... 12

○ 제권 판결 ..... 13

○ 결정 ..... 14

○ 심판 ..... 14

○ 공무원 사망(서울지방항공관리국) ..... 15

| 회 |  |  |  |  |  |  |  |  |
|---|--|--|--|--|--|--|--|--|
| 람 |  |  |  |  |  |  |  |  |

1

2503 A-1-4  
1969. 1. 31. 승인

## 제한민국정부

190×268 신문용지 50g/m<sup>2</sup>

1549

**오늘의 중요지표****대통령 각하유시 (1972. 11. 24)  
비상 국무 회의시**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하오 청와대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유시했다.

**각하유시**

유신헌법이 지난번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를 받고 통과 확정된 것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경하할 일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며, 또한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과거 10여년동안 힘을 기울여 온 국력 배양과 이를 토대로 한 남·북 대화등, 정부의 시책과 노력에 대해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며칠전 내가 담화에서도 강조했듯이 10월 유신은 헌법 개정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산적된 일

들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길을 마련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유신과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다 더 진지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을 위해 할일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새 헌법에는 제반낭비와 비능률, 그리고 부조리등을 거의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지만, 길이 마련되었다 해서 행동과 노력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종전보다 축소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맡은 일을 소홀히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모든 공직자들은 보다 더 자신의 성실한 자세를 가다듬고, 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더 국민을 위

해 충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부 장관들은 이러한 나의 뜻을 위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인식시켜서 부하 직원들이 각기 능  
률과 책임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깨끗  
하고 명랑하고 훌륭한 정부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  
기 바란다. 끝

[ 관보 서명란 ]

## 총 무 처

국무총리지시 제19호

(70-4350)

1972. 11. 28

수 신 수신처참조

## 제 목 관용차량 운용 쇄신에 관한 지시

근자 관용차량의 관리 운용에 있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이를 발본 시정코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기관장은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 조속히 초기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용차량배정기준령에 의한 차량배정 정수(T/E) 및 예산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차량 대수를 감축 조정할 것이며, 소정의 법정절차를 필하지 않았거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197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말소하는 등 제반 정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973년 1월 15일까지 총무처장관 경유 보고할 것.
2. 내무부장관은 무작차량이 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차량도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기준에 준하여 차량대수를 감축 조정하고 운용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
3. 경제기획원장관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차량배정 정수(T/E)에 의거 차량비 예산을 양성화하도록 할 것.
4. 교통부장관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현행 정부 차량등록 번호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1972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
5.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관용차량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않은 차량이 등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왕에 배정확인증 없이 등록된 차량은 그 절차를 보완하지 않는 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나다

5

1553

4704

## 부 령

### ◎농림부령제514호

농촌진흥청시험장출장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전증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2년 11월 29일

#### 농 림 부 장 관

#### 농촌진흥청시험장출장소의명칭과위치에관한 전증개정령

농촌진흥청시험장출장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전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증 호남작물시험장 해남출장소란 원예시험장 중원출장소란 및 원예시험장에 산출장소란을 삭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 시

### ◎법무부고시제126호

아래 사람은 1972년 11월 16일 중화민국 국민인 楊從良과 혼인하여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2년 11월 25일

####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41번지  
의 2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6번지의 5

성 명 방 복 남(方福男)

생년월일 1952년 5월 23일

성 별 여

### ◎법무부고시제127호

아래 사람은 1972년 11월 17일 중화민국 국민인 陳長原과 혼인하여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2년 11월 25일

####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경기도 인천시 남구 주안동 295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7의 8

성 명 이 복 년(李福年)

생년월일 1948년 5월 5일

#### 성 별 여

### ◎상공부고시제9, 371호

남성총업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텔레비죤 수상기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72년 11월 27일

#### 상 공 부 장 관

| 업 체 명    | 모 텔     | 지정판매가격<br>(물품세제외) |
|----------|---------|-------------------|
| 남성총업주식회사 | CTV-707 | ₩60,000           |
|          | CTV-606 | ₩58,800           |

####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상공부고시 제9, 326호는 이를 폐지한다.

### ◎상공부고시제9, 372호

상공부고시 제7, 562호(대미인모설유수출코타운영요령)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2년 11월 27일

#### 상 공 부 장 관

제 7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3 차년도 이후의 상사별 기본코타 배정은 그 전년도의 대미 수출실적 인정분의 금액기준 70%, 수량기준 30%로 하여 안분배정한다. 단, 동기간 대미 섬유코타로 5,000,000불 이상 수출한 상사는 수량기준 70% 금액기준 30%의 배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제 10 조제 1 항 “나” “다”호를 삭제하고 “라”호를 “나”호로 하고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상공부장관이 별도 정하는 수출목표달성을 공헌한 분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호……배정비축코타 총량의 20%
- 나호……배정비축코타 총량의 60%
- 다호……배정비축코타 총량의 20%

제 18 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200%까지를 공제한다.

제 19 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2 차년도의 기본코타 배정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건설부고시제501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설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2년 11월 25일

건설부장관

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 종류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사용기간 허가를 받은자의 주소·성 명  
1972. 11. 25 경북 영월군 오천면 해면 128,032m<sup>2</sup> 열기성내화물 허가일로 경기도 인천시 남구 주안동 22  
청림 2동 산 1의 1 (38,730평) 생산광장건립 삼화화성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시 연

## ◎건설부고시(서울)제26호

서울도시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 및 경기도청과 시흥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1972년 11월 25일

건설부장관

## 자적승인조서

| 지   | 번   | 지   | 적       | 지     | 비 | 고 |
|-----|-----|-----|---------|-------|---|---|
| (경) | 목   | 목   | 비       | 고     |   |   |
| 시흥군 | 파천면 | 주암리 | 산 13-1  | 4,860 | 임 |   |
| 시흥군 | 파천면 | 주암리 | 산 13-6  | 9,480 | 임 |   |
| 시흥군 | 파천면 | 주암리 | 산 13-7  | 9,510 | 임 |   |
| 시흥군 | 파천면 | 주암리 | 산 13-8  | 3,840 | 임 |   |
| 시흥군 | 파천면 | 주암리 | 산 13-11 | 690   | 임 |   |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산13-10 60 일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104-5 18 일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104-3 110 전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104-4 22 일  
시흥군 파천군 주암리 104-2 34 일  
계 28,624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생략).

## ◎체신부고시제268호

공중전기통신업무위탁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전화취급소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년 11월 24일

체신부장관

## 1. 설치사항

| 취 급 소 명 위                    | 처 취 급 업           | 무 취급시간 | 취급개시일        |
|------------------------------|-------------------|--------|--------------|
| 화개부춘리전신전화취급소 경남하동군화개면부춘리1096 | 전신(영문불취급, 폐달않음)통화 | 24시간   | 1972. 11. 29 |
| 화개덕온리                        | 덕온리 578           | "      | "            |
| 화개정금리                        | 정금리 1188          | "      | "            |
| 화개삼신리                        | 삼신리 147           | "      | "            |
| 화개운수리                        | 운수리 208           | "      | "            |
| 화개용강리                        | 용강리 47            | "      | "            |
| 화개대성리                        | 대성리 1359          | "      | "            |
| 화개법왕리                        | 법왕리 636           | "      | "            |
| 삼장석남리                        | 경남산청군삼장면석남리 139   | "      | "            |
| 삼장평촌리                        | 평촌리 63            | "      | "            |
| 삼장홍계리                        | 홍계리 26            | "      | "            |
| 삼장유평리                        | 유평리 958           | "      | "            |
| 삼장내원리                        | 내원리 124           | "      | "            |
| 삼장대하리                        | 대하리 436           | "      | "            |
| 삼장덕고리                        | 덕고리 236           | "      | "            |
| 복상소정리                        | 경남거창군복상면소정리 247   | "      | "            |
| 복상병곡리                        | 병곡리 767           | "      | "            |
| 복상산수리                        | 산수리 703           | "      | "            |
| 복상월성리                        | 월성리 1287          | "      | "            |
| 복상창선리                        | 창선리 313           | "      | "            |

| 취 급 소 명 위                     | 취 급 업 무            | 취급시간 | 취급개시일      |
|-------------------------------|--------------------|------|------------|
| 북상농산리 전신전화취급소 경남거창군북상면농산리 269 | 전신(영문 불취급, 배달않음)통화 | 24시간 | 1972.11.29 |
| 언양직동리 "                       | 경남울주군언양면직동리 792    | "    | "          |
| 언양반곡리 "                       | 반곡리 723            | "    | "          |
| 언양평리 "                        | 평리 512             | "    | "          |
| 언양다개리 "                       | 다개리 388            | "    | "          |
| 언양해기리 "                       | 해기리 618            | "    | "          |
| 언양반송리 "                       | 반송리 676            | "    | "          |
| 언양반천리 "                       | 반천리 373            | "    | "          |
| 언양반연리 "                       | 반연리 121            | "    | "          |
| 언양대곡리 "                       | 대곡리 809            | "    | "          |
| 이방현창리 "                       | 경남창녕군이방면현창리 222    | "    | "          |
| 이방성산리 "                       | 성산리 137            | "    | "          |
| 이방상리 "                        | 상리 500             | "    | "          |
| 이방모곡리 "                       | 모곡리 386            | "    | "          |
| 이방옥천리 "                       | 옥천리 329            | "    | "          |
| 이방초곡리 "                       | 초곡리 362            | "    | "          |
| 이방동림리 "                       | 동림리 463            | "    | "          |

## 공 고

항이 변경되었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72년 11월 17일

노 동 청 장

## ◎노동청공고제466호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계약사항변경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증 다음과 같이 계약사

##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계약사항변경사항

| 사무<br>소명 | 지정<br>번호 | 등급 | 의료기<br>관명 | 계약자 | 변경 사항    |      |                |                | 비 고   |
|----------|----------|----|-----------|-----|----------|------|----------------|----------------|-------|
|          |          |    |           |     | 변        | 경    | 전              | 변경 후           |       |
| 부산       | 819      | E  | 고계환정형외과의원 | 고계환 | 부산진구양정동  | 345  | 부산진구양정동336의5   | 부산진구양정동336의5   | 소재지변경 |
| "        | 982      | E  | 갑산의원      | 박유근 | 부산진구구포동  | 526  | 부산진구구포동1060-45 | 부산진구구포동1060-45 | "     |
| "        | 740      | E  | 변안파의원     | 변제욱 | 부산시중구충무동 | 2가38 | 부산시중구충무동2가37   | 부산시중구충무동2가37   | "     |

## ◎부산지방해운국공고제138호

다음과 같이 선박검사증서를 분실하였기 무효공  
고한다.

1972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운국장

선 명 : 만성호

선박번호 : 22280

총 톤 수 : 1.88

증서번호 : 210

소유자 : 한재동

## 지 방 행 정

## ◎서울특별시공고제268호

서울시내의 가로명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特別市街路名制定公告

(취지) 우리 수도 서울은 500年 王都로서 創建된 이래 오늘날까지 政治, 經濟, 文化, 教育等 各分野에 걸쳐 명실 상부한 中心地로서 날로 그 면모를 일신해온 바 特히 最近 10餘年間 그야말로 눈부신發展을 이루하였읍니다.

1556 8

이러한 서울의 비약적인 發展은 必然的으로 都市機能의 원활을 爲해 대폭적인 道路의 新設擴張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더욱 復雜多岐해진 道路는 그 區分이 매우 어려워 市民의 一常生活이나 行政業務遂行에 있어不少한 不便을 겪는 實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966年 38個 道路에 이름을 制定告

示한바 이어 이번 또다시 아직 이름이 없는 主要道路에 歷史的, 文化的 연유와 現代的 生活감각을 존중하여 새로이 이름을 制定하여 確定公告합니다. 600萬市民 모두가 널리 記憶하고 使用함으로써 首都市民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新規賦與街路名

| 區<br>間                              | 街路名<br>緣 | 由<br>備<br>考  |
|-------------------------------------|----------|--|
| 1. 동교동—연희동—홍은동R                     | 延福路      | 옛날 延福宮이  |
| 2. 신촌R—연대앞—수색—시<br>계                | 加佐路      | 南北加佐洞이 있음  |
| 3. 홍은R—北岳터널—길음교                     | 洗劍路      | 洗劍洞이 있음  |
| 4. 사직동—자하문                          | 北岳路      | 현재 부르고 있는 仁旺 Sky-way와 北岳 Sky-way를 합쳐 北岳路라 하고 通稱은 北岳, 仁旺 Sky-way라 한다. |
| 5. 자하문—북악—돈암동                       |          |  |
| 6. 신촌R—서강대—공덕R                      | 西江路      | ○西江大 西江驛이 있음   |
| 7. 공덕R—만리동—서부역                      | 萬里路      | ○옛적 崔萬里라는 名士가 살았기 때문에 萬里洞이라는 지명 生成                                   |
| 8. 어린이회관—탈각정—To-<br>wer-Hotel—어린이회관 | 南山路      | 從來의 素月路(K.B.S—어린이회관—漢南洞)<br>는 없어짐                                    |
| 9. 청량리R—중량교—당우리<br>市界               | 忘憂路      | ○太祖가 자기묘지터(東九陵)를 定하고 둘 아온 길에 근심을 잊었다해서 이곳을 忘憂里라 命名한에서 緣由             |
| 10. 회기동—外大壹—石串洞                     | 里門路      | ○地名에 緣由  |
| 11. 미아3거리—우이교—道奉<br>市界              | 道峯路      | ○道峯山, 道峯洞이 있음  |
| 12. 수유리—우이동(4.19)묘지<br>입구—그린파크      | 白雲路      | ○白雲臺로 가는 길   |
| 13. 미아리—미아국민—삼양국<br>교—4.19묘지        | 三陽路      | ○三陽洞으로 通함  |
| 14. 상봉동(한독약품)—목동—<br>서울工大—도봉동       | 東1路      | 14. 15番道路는 서울의 東쪽에 있는 大基幹<br>道路임을 표시하기 위해 東1路, 東2路로 함                |
| 15. 상봉동—동양정밀—華陽洞<br>—영동교            | 東2路      |  |
| 16. 목동—화방역—태농시계                     | 泰陵路      | 陸士가 있고 泰陵選手村이 있음   |
| 17. 담십리—전농동—청량리                     | 典農路      | ○李朝때 임금이 친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br>다는 典農園이 있었음                              |
| 18. 노량진—상도동(장승백이)                   | 長勝路      | ○옛적 고개마루터에 장승이 세있었고 現在도<br>장승백이로 불리어지고 있음                            |
| 19. 상도동(장승백이)—봉천동<br>—서울大           | 奉天路      | ○奉天洞을 지남   |
| 20. 상도동(장승백이)—신림동<br>—서울대           | 新林路      | ○지명을 그대로 땄음  |
| 21. 사당동—남태령시계                       | 舍堂路      | ○지명을 그대로 땄음  |

10. 11番 街路는  
서울의 登攀地로  
서 道峯山과 白雲  
臺를 상징하는 名  
稱을 選定함.

| 區<br>間                  | 街 路 名      | 緣  | 由 備<br>考                |
|-------------------------|------------|--|-------------------------|
| 22. 동작동—영동자구 (경부고 속도로)  | 銅雀路        | ○既存銅雀路(第1 한강橋—國立墓地)를 延張  |                         |
| 23. 가리봉동—봉천동—사당동        | 冠岳1路       | 23. 24番 街路는 서울의 명산 관악산 앞을 관통하는 남부 순환도로임을 표시하기 위함.                  |                         |
| 24. 사당동—말죽거리            | 冠岳2路       |  |                         |
| 25. 제3한강교—역삼동           | 永東1路       | ○永東地區 街路網의 微細로 永東 1,2一路로 함으로써 街路區分을 容易케 함.                         |                         |
| 26. 압구정동—역삼동            | 永東2路       |  |                         |
| 27. 압구정동—도곡동            | 永東3路       |  |                         |
| 28. 압구정동—도곡동            | 永東4路       |  |                         |
| 29. 청담동—대치동             | 永東5路       |  |                         |
| 30. 영동교남단—대치동           | 永東6路       |  |                         |
| 31. 제3한강남단—狎鷗亭洞<br>—青譜洞 | 湖堂路        | 옛날부터 옥수동에서 보면 이곳은 하나의 연<br>못 같다면서 湖堂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음                   |                         |
| 32. 신사동—영동교남단           | 島山路        | ○島山公園이 路邊에 있음  |                         |
| 33. 논현동—학동청담동           | 鶴路         | 鶴洞을 지남   |                         |
| 34. 논현동—봉은사             | 奉恩路        | ○奉恩寺가 있음   |                         |
| 35. 瑞草洞—三城洞             | 三陵路        | ○路邊에 靖陵(中宗) 宣陵(成宗) 이陵(景宗계<br>비릉)의 3陵이 있음                           |                         |
| 36. 驛三洞—大峙洞             | 驛三路        | ○地名을 扮음  |                         |
| 37. 잠실교남단—시계            | 松坡路        | ○地名을 扮음  |                         |
| 38. 잠실교서단—봉납동           | 蠶室路        | ○地名을 扮음  |                         |
| 39. 제2한강—양평동—문래동        | 文來洞        | ○地名을 扮음  |                         |
| 40. 영등포구청—경인고속도로        | 五木路        | ○五木橋를 지남   |                         |
| 41. 가리봉동—구로동            | 九老路        | ○九老工業團地를 貫通함   |                         |
| 42. 당산 6가—문래3가          | 堂山1路       | ○堂山이라는 地名이 옛날 제사를 지내는 곳에<br>서 緣由된 것임                               |                         |
| 43. 당산 7가—영등포역전         | 堂山2路       |  |                         |
| 44. 광진교—천호동 상일동 시<br>계  | 千戶路        | ○千戶洞이라는 지명이 옛날 어느 사신이 를<br>이 높은 것을 보고 千戶는 능히 살겠다고 한<br>故事에서 緣由한 것임 |                         |
| <u>既 使用 街 路 名 調 整</u>   |            |  |                         |
| 路 線<br>區<br>間           | 既使用<br>街路名 | 調 整<br>街路名   | 緣                       |
| 1. 제일한강—영등포구청           | 六臣路        | 忠臣路  | ○路邊에 四六臣墓地가 있음          |
| 2. 대방동—신대방동             | 甘賛路        | 六方路  | ○地名을 扮음                 |
| 3. 염곡동—대왕교              | 大谷路        | 大谷路  | ○염곡동—대왕교                |
| 4. 신설동—답십리—천동           | 新踏路        | 新踏路  | ○신설동—답십리                |
| 5. 여의도—周                | 輪中提        | 輪中提  | ○祚(提坊)을 따라 여의도를一周하는 道路임 |

路線區間 調整路 및 新規命名

| 從 前 區 間                 | 既 使 用 路 名 | 調 整 區 間                                   | 新 規 路 名           | 由  |
|-------------------------|-----------|---|-------------------|--|
| 1. 中央洞—효자동              | 孝子路       | 중앙동—효자동—서검정                               | 孝子路               | ○從前 孝子路(中央洞—孝子洞)를 洗<br>鏡亭까지 延長   |
| 2. 서소문—신촌—제 2 한<br>강—풍향 | 空港路       | ○서소문—신촌R<br>○신촌R—제 2 한강교<br>○제 2 한강교—김포공항 | 新村路<br>楊花路<br>空港路 | ○新村을 지남<br>○옛날 楊花나루가 있었음<br>○金浦空港으로 가는 大路임   |
| 3. 해화R—미아 3거리<br>수유리    | 彌阿路       | ○해화동R—미아 3거리                              | 彌阿路               | ○彌阿洞을 貫通함  |
|                         |           | ○미아 3거리—도봉동시계                             | 道峰路               | 新規命名道路 10番 參照  |
| 4. 왕십리R—천호동             | 광장로       | ○城東橋—광진교                                  | 세 쪽 길             | ○어린이大公園으로 가는 길이며 어린<br>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名稱을 선<br>정했음   |
| 5. 1) 제1한강—영등포구<br>청    | 강변 1로     | 하일동시계—靈室교남단                               | 江南 1路             | ○從前江邊路는 建設順에 依據 番號를<br>賦與했기 때문에 混亂이 커므로 이<br>번에는 江邊路中 漢江北岸路는 上流<br>에서부터 下流로 내려오면서 江邊 1,<br>2…路로 하였고 漢江南岸路는 上流<br>에서부터 江南 1, 2…路로 命名했음. |
| 2) 영등포구청—제2한강           | 강변 2로     | 광장동시계—잠실교북단                               | 江邊 1路             |  |
| 3) 제1한강—제2한강            | 강변 3로     | 잠실교남단—제 3 한강북<br>단                        | 江南 2路             | ※ 各區間은 灵室橋, 第 3 漢江橋, 第 1<br>2…路로 하였고 漢江南岸路는 上流<br>에서부터 江南 1, 2…路로 命名했음.  |
| 4) 제1한강—용비교             | 강변 4로     | 잠실교북단—제 3 한강북<br>단                        | 江邊 2路             |  |
| 5) 제1한강—영동교             | 강변 5로     | 제 3 한강남단—제 1 한강<br>남단                     | 江南 3路             | 漢江橋, 第 2 漢江橋로 區分했음.  |
| 6) 용비교—잠실교              | 강변 6로     | 제 3 한강북단—제 1 한강북<br>단                     | 江邊 3路             |  |
| 7) 영동교 북단—하일동<br>시계     | 강변 7로     | 제 1 한강남단—제 2 한강남<br>단                     | 江南 4路             |  |
| 8) 제2한강—난지도시계           | 강변 8로     | 제 1 한강북단—제 2 한강북<br>단                     | 江邊 4路             |  |
| 9) 양화동—개화동시계            | 강변 9로     | 제 2 한강남단—개화동시계                            | 江南 5路             |  |
| 10)                     |           | 제 2 한강북단—난지도시계                            | 江邊 5路             |  |

**판 보**

○공시최고  
72. 가. 1, 345  
대전시 대흥동 45-6

신청인 회명 철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2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  
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

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20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정 동 윤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라00176607라
1. 액 면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11월 13일
1. 지급인 대덕군농업협동조합
1. 발행인 대덕군농업협동조합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 1,329

대전시 문창동 33

신청인 허영립

다음 기재의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15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15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정 동 윤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No 424509
1. 액 면 금2,548,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11월 15일
1. 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대전지점
1. 발행인 곽창배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당좌수표 1매
1. 번 호 No 424512
1. 액 면 금2,463,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11월 20일
1. 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대전지점
1. 발행인 곽창배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당좌수표 1매
1. 번 호 No 424515
1. 액 면 금2,588,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11월 27일
1. 지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대전지점

1. 발행인 곽창배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 5,061

대구시 중구 북성로 2 가 5

신청인 석정수(石丁洙)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73년 3월 8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2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박종윤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00454387호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대신동지점
1. 발행년월일 미상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00454388호
1. 액 면 금50,000원정
1. 발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대신동지점
1. 발행년월일 미상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제권판결

72. 카. 157

경기도 여주읍 창리 78

신청인 박원묵

다음 증서에 대하여 당법원에서 공시최고를 한바 있으나 1972년 11월 23일 16시까지 권리를 다투는 신고나 청구를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제권판결 신청에 의하여 위 증서는 무효임을 선고한다.

1972년 11월 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사 김규복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매
1. 번 호 가02280904가
1. 액 면 금400,000원정

12

1. 발행년월일 1972년 8월 4일  
 1. 발 행 인 여주군 농업협동조합  
 1. 지 급 인 여주군 농업협동조합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2. 카.831

대전시 정동 7

신청인 정찬주  
 다음 기재 증서에 대하여 1972년 11월 18일 10시  
 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  
 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  
 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2년 11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정 동 윤

## 증서의 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2200162호  
 1. 액 면 금 2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2년 6월 14일  
 1. 지급인 및 대덕군농협원동예금취급소  
 1. 발 행 지 대덕군농협원동예금취급소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결 정

72. 코. 1

주 소 충북 제천읍 명동 186  
 본 적 강원도 북평읍 지가리 2구 178

청구인 권오영(權五榮)

## 주 문

청구인에게 금 66,800원을 지급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  
 이 1971년 10월 23일 대림운수 소속 강원영 7-10  
 55호 화물자동차를 운행중 충북 제천읍 두학리  
 소재 조상수집앞 노상에서 업무상 파실치사 피  
 의사건을 발생케 하였다는 협의로 같은 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이원형의 구속  
 영장 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황일근 발부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 날 구속  
 되고, 1972년 2월 1일 제 1심인 위 지원에서 업무  
 상 파실치사죄로 금고 10월의 선고를 받은 후 청  
 구인은 즉일 청주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여 같은  
 해 4월 11일 같은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  
 아 같은 날 출감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  
 원에 상고하여 같은 해 7월 25일 대법원에서 상  
 고기자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무죄판결이 확  
 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1971년 10월 27일 구속되어  
 1972년 4월 11일 출감되던 날까지 168일간을 무고하  
 게 구금되어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였으  
 므로 1일 금 1,000원씩으로 계산하여 금 168,000  
 원의 보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있으므로 살  
 피전대, 일전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면, 청구  
 인의 위 형사보상금 청구이유인 주장사실은 그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보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 66조 규  
 정에 의한 기간계산으로 청구인의 구금일수를 계  
 산하면 167일이 되며, 형사보상법 제 4조에 의하  
 여 1일을 금 4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하면 위 총  
 구금일수 167일에 대하여 금 66,800원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돈 66,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 16조에 의하여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  
 므로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72년 11월 11일

청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  
 재판장 판 사 박종창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준석

## ○심 판

72. 느. 19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1번지  
 청구인 조언현(趙言蓮)  
 본적 및 최후주소 위와같음.  
 사건본인 윤석춘(尹錫春)  
 (부재자)

1928년 12월 17일 생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종선고  
 청구가 있으므로 당원은 1972년 5월 17일 부재자  
 의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을 공시하고 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2년 11월 2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

므로 부재자는 1950년 6월 29일경 이후 3년 이상 생사불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주 문

부재자 윤석춘(尹錫春)의 실종을 신고한다.

1972년 11월 22일

청주지방법원

심판관 정태원

## ○공무원사망

다음 공무원이 사망하였기에 휘보한다.

1972년 11월 24일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

소 속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

직 급 행정서기보

성 명 이병홍(李秉興)

사망일자 1972년 2월 28일

비 고 군복무중 전사